

예산총칙

202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85,122,977	11,553,689
일반회계	376,872,753	11,306,183
특별회계	8,250,224	247,507
기타특별회계	8,250,224	247,507
상수도특별회계	2,977,101	89,313
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937,733	28,132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90,590	26,718
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	3,188,800	95,664
주차장특별회계	210,000	6,30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6,000	1,38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 "해당없음"과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393,22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첨 "기금운용계획"과 같다.

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